# 제 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임서정

# 오늘의 학습목표

- ▶ 01.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 누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단체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를 지는가?
- ▶ 0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누구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가?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는 어떠한 제재를받는가?
- ▶ 03. 단체협약
  -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 단체협약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 단체협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 01.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 (1) 단체교섭이란?

- ◆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서 근로조건 또는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교섭을 단체교섭이라 함
  -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바탕으로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

#### (2) 단체교섭과 그 보호

-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이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 ◆ 한편 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 ①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제3조)
- 오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제4조)
-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제29조)
-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제30조 제1항)
-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제30조 제2항)
-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해위로 금지됨(제81조제3호)

# 2. 단체교섭권의 주체

####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단체교섭의 결과 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 단체교섭의 당사자에는 근로자측 당사자(단체교섭권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당사자(단체교섭의무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있음
  - '사용자단체'는 단순한 사용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규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이 있어야 함(대법원 1992.2.25. 90누9049)
- ◆ **단체교섭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mark>단</mark> 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
  - → 즉 법률의 규정(노조법 제29조 제1항)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표시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제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함

# 2. 단체교섭권의 주체

-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노조법 제29조 제1항)
  - 노동조합규약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전체조합원의 직접투표를 통하여 그러한 합의에 인준을 받아야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인준투표' 조항은 조합원 전체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단체협약을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취지임
  - 그런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이른 사항이 조합원들의 인준투표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이나 노사관계의 악화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 대법원은 이러한 인준투표제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 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대법원 1993.4.27. 91누12257)

# 2. 단체교섭권의 주체

- ◆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임
  - 이에 노동조합법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단체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6조 제1항 제3호)
  -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 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됨(대법원 2014.4.24. 2010 다24534)

#### 3. 단체교섭의 대상

- ◆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말함
  - 교섭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집 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 함

#### (1)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 ◆ 근로조건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 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등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3. 단체교섭의 대상

#### (2)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 ◆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안전, 휴식 등의 근로조건**은 교섭대상에 포함됨
- ◆ 또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 이 아닌 경우(예: 운송회사에서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정순서에 관한 노조의 사전합의 등)도 교 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 다만,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판례의 입장임

# 3. 단체교섭의 대상

#### (3)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

- ◆ 조합강제조항, 조합비 공제,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 조합운영의 편의제공, 노동조합 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 포함
- ◆ 그러나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성차별적 채용 기준 합의 등 **강행법규** 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은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4. 성실교섭의무

-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 위를 수반해서는 안됨
-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노조법 제81조 제3호)

# 0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제29조의2)

####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음(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법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사용자가 이러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의4)
- 한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4)
- ◆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의 조합원 수 등 법정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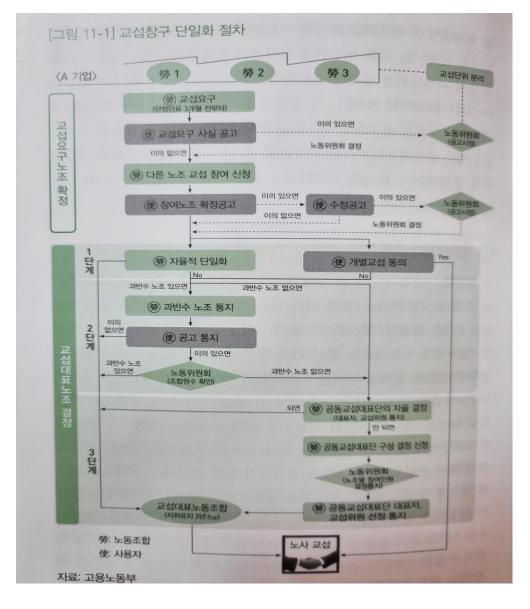
- ◆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 는 사업장임(제29조의3 제1항)
  - 다만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제29조의3제2항)
  - ▶ 이 경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합(제29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 ② 이러한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 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 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 포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③ 위 방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 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함(노조 법 제29조의2 제5항)
-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음(노조법 제29조의2 제6항)

#### 0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 2. 공정대표의무

-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와 그 소속 조합 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기 때문
  -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러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특정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함(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 및 제3항)
  - 이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에 위반하면 노조법 제 89조의 벌칙이 적용됨

# 3.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노조법 제81조 제3호)
  - ▶ 부당노동해위가 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에는 교섭 단계뿐만 아니라 협약체결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체결을 거부•해태하는 것도 포함되며 형식상으로는 교섭에 응하면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해당됨
  -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나 주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여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의무는 있으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 들여 합의하거나 양보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음
- ◆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권자, 교섭사항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함

# 3.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 ▶ 노조법은 단체교섭 인원, 장소 등 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교섭의 절차와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체 협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노사관행이나 노사 간 합 의에 의해 결정해야 함
- 사전 협의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특정 교섭방식 요구에 사용자가 당연히 응해야 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집단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근로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집단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형사벌칙**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03. 단체협약

# 1. 단체협약이란

- ◆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교섭한 결과로서 근로 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문서를 말함
  - ▶ 따라서 문서에 의하는 한 명칭은 불문임
  - ▶ 통일적인 1개 문서로 하는 경우는 물론, 임금만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 ◆ 이러한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

# 2. 단체협약의 요건

#### (1) 실질적 요건

- ◆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합의**함으 로써 성립
  - 따라서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작성하게 되면 단체협약에 해당

#### (2) 형식적 요건

- ◆ 단체협약은 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노조법 제31조 제1항)
  - ▶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 없이 기명만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음
- ◆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

#### 3.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규범적 부분)과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부분(채무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그 효력을 달리함

#### (1) 규범적 부분

-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을 말함
  -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접 규율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근로조건이 설정됨
  -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 만약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됨

#### 3. 단체협약의 효력

#### (2) 채무적 부분

-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결강제, 조합비 공제, 편의제공약속 등을 말함
  - 이들 채무적 부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하지 않을 의무 를 발생시킴
  - 또한 이들 의무에는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하여 협약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포함됨

# 3. 단체협약의 효력

#### (3) 단체협약의 해석과 내재적 한계

-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해서는 안됨(대법원 2017.2.15. 2016다32193)
  - ▶ 한편,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11.7.28. 2009두7790)

####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1) 일반적 구속력

-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 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노조법 제35조)
  - 여기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의미함
  - 따라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나,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함(대법원 2005.5.12. 2003다52456)

#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한편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단체 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 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

#### (2) 지역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노조법 제36조 제1항)

#### 5. 단체협약의 종료

#### (1) 유효기간

- ◆ 단체협약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노조법 제32조 제1항)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노조법 제32조 제2항)
  -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짐(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
  - ▶ 판례는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단체협약이 실효되 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 율한다는 입장임(대법원 2000.6.9. 98다13747)

#### 5. 단체협약의 종료

#### (2)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과 해지

-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 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수 있음(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 ▶ 판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임(대법원 2016.3.10. 2013두3160)

# 참고자료

주 자료: 한국노동법학회(2022), 교양노동법 제3판, 문우사.

보조자료: 임종률(2022), 노동법 제20판, 박영사.

사례참조: 박귀천•박은정•권오성(2021),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박영사.